

비밀엄수서약서

본인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- 본인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 업무가 외교관계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임을 이해하고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「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
- 본인은 이 서약이 「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임을 알고, 비밀엄수서약 이후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할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「형법」 제127조에 따른 처벌을 받겠습니다.

년 월 일

소 속 :

주민등록번호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장관 귀하